

		시 민	
문서번호	인재기획과-771	주무관	U-러닝팀장
결재일자	2013. 1. 18.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유영환	김재환
방침번호		배형우	01/18 남원준
		협 조	시설재무팀장
		이성용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계획

2013. 01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사건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 참여 고려 사항	● 시민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이해당사자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전문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음 브 즈 만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법령 및 기타 고려 사항	● 법령 규정 : 교통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재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 무 <input type="checkbox"/>
	● 기타 : 고용효과 <input type="checkbox"/> 성인지 <input type="checkbox"/> 균형인지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노동인지 <input type="checkbox"/>
	갈등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유지관리 비용 <input type="checkbox"/> 무 ■
타 자원 의 활 용	● 중앙부처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민간단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기업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관계 기관 및 단체 협의	● 관계 기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 관련 단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계획

고품질의 안정적인 행정정보서비스 제공과 각종 장애발생시 신속한 장애복구 조치를 위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보수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시스템 유지보수 방안

- 정보통신시스템(전산장비 및 통신회선 포함) 및 IP전화 교환시스템의 정기점검 및 상시 유지보수 체제 구축
- 정기적인 예방점검으로 장비수명을 연장시키고, 장애발생시 신속한 장애복구 조치로 상시 가동체제 유지

■ 유지보수 시스템 내역

구 분	종 류	수량	비 고
정 보 통 신 시 스템	백본스위치	2	
	광스위치, PoE스위치, 스위칭허브	52	
	통신회선	380	
전 산 장 비	교육용, 업무용 컴퓨터(PC) 등	320	
IP전화교환 시스템	IP전화교환기, IP전화	287	
무정전전원장치	10K(2), 3K(4), 2K이하	18	
항온항습기	3RT	5	
변 압 기	3상 380V	1	

- LAN, PC 유지보수 대상은 도입후 1년이상인 업무용 및 교육용 장비
- 프린터 토너, 케이블류 소모품은 소량으로 부서에서 별도 구매사용

■ 세부추진계획

I. 정보통신(LAN)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추진기간 : 2013. 3. 1 ~ 2014. 2. 28.
- 유지보수 방법
 - ▷ 정기점검 : 유지보수 특수조건(과업지시서)에 의해 상주요원에 의한 점검
 - ▷ 수시점검 : 장애발생시 업무담당자 등의 장애처리 요청에 의한 유지보수
- 유지보수비 산정
 - ▷ 정보통신장비, 컴퓨터 등 : 취득원가 8%이내
 - ▷ 정보통신회선 등 : “표준품셈”에 의한 산출
- 입찰참가자격
 -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등록업체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산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 ▷ 관공서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단일건 2천만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 ▷ 주요장비[백본스위치 등]제조·공급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 계약방법 : 공개(제한)경쟁입찰
 -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39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업체
- 소요예산 : 72,375천원(부가세 포함)
 - ▷ LAN장비·회선 : 35,851천원, 컴퓨터(PC)등 단말 유지보수 : 36,524천원
 - ▷ 예산과목 : 인재원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정보통신장비유지비)
- 유지보수 내용
 - ▷ 정보통신장비, 단말 컴퓨터, 정보통신회선 등 :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 복구조치

Ⅱ. IP전화(인터넷 전화)교환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추진기간 : 2013. 2. 1 ~ 2014. 1. 31.
 - 유지보수 방법
 - ▷ 정기점검 : 유지보수 특수조건(과업지시서)에 의해 비상주요원에 의한 점검
 - ▷ 수시점검 : 장애발생시 업무담당자 등의 장애처리 요청에 의한 유지보수
 - 유지보수비 산정
 - ▷ IP전화교환시스템 장비 : 취득원가 8%이내
 - ▷ 정보통신회선 등 : “표준품셈”에 의한 산출
 - 업체자격
 -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 업체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와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저렴한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업체
 - ▷ 사유 : 2010~2011년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업체로서 IP전화교환기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 조치, 장애예방 정기점검 및 IP전화 신규·이전 설치시 즉시 조치 가능
 - 소요예산
 - ▷ IP전화교환시스템 유지보수 : 17,868천원(부가세 포함)
 - ▷ 예산과목 : 인재원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IP전화교환시스템 유지관리)
 - 유지보수 내용
 - ▷ IP전화교환시스템 :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 복구 조치, 단말이설 등
- ※ 따로붙임 : 1. 산출내역서 각 1부.
2. 과업지시서(특수조건) 각 1부. 끝.

산출 내역서

1. 산출기초(표준품셈)

구분	작업종별	단위	수량	H/W시험기사		S/W시험기사		비고
				기본품	계	기본품	계	
전원부	정류기/BAT점검	식	1	0.06	0.06			통신8-4
	전원부회로기판점검	랙	1	0.06	0.06			
	접지저항점검	회	1	0.02	0.02			
통화로부	내선연결 및 감도상태점검	100회선	2.3	0.8	1.84			"
	국선/DOD/DID/전용선점검	10회선	7	0.1	0.7			
	커넥타 접속/청결상태	랙	1	0.01	0.01			
제어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점검	랙	1	0.03	0.03			"
	제어부회로기판 및 이중화점검	랙	1	0.04	0.04			
	데이터백업점검	시스템	1	0.01	0.01			
부가장비	MOH점검	대	1	0.01	0.01			"
	요금등산장치 점검	시스템	1			0.3	0.3	
기타	전화기 점검	대	202	2.08	4.2016			"
	컴퓨터(S/W, H/W) 점검	대	1	0.04	0.04			
	MDF(청결상태 포함)	열	1	0.04	0.04			
소계					7.0616		0.3	

2. 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	공종	노무비	산출내역	합계	비고
월단위	H/W 시험기사	183,444	7.0616	1,295,408	
	S/W 시험기사	194,219	0.3	58,266	
월간	소계			1,353,674	
	부가세			135,367	
	합계			1,489,041	
년간	총계			17,868,492	

230대

총 괄 (산 출) 내 역 서

용역명 : 정보통신시스템(시설장비 등) 유지보수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년)	정보통신 유지보수		단말PC 및 프린터 유지보수		경 비		계 금 액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정보통신시스템(시설장비 등) 유지보수		식	1	32,592,000	32,592,000	33,204,000	33,204,000			65,796,000	
합 계					32,592,000		33,204,000			65,796,000	
부 가 세										6,579,600	
총 계										72,375,600	

내역서

용역명 : 정보통신시스템(시설장비 등) 유지보수

품명	단위	수량	장비		회선		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금액	
정보통신 유지보수	식	1	24,828,000	24,828,000	7,764,000	7,764,000	32,592,000	
단말 PC 및 프린터 유지보수	식	1	33,204,000	33,204,000		-	33,204,000	
소계(천원이하 절사)				58,032,000		7,764,000	65,796,000	

설 계 내 역 서

□ 정보통신시스템(시설장비 등) 유지보수용역

품 명	규 격	단 위	수량	취득단가	구입금액	재료비 (년8%이하)	노무비	산출금액 (월단가)	산출금액 (년단가)	비고
□ 정보통신 장비 유지보수										
백분스위치	B08810	식	2	53,753,920	107,507,840	5,912,000		492,000	5,904,000	
스위치	Summit x450a-24x	EA	6	11,177,276	67,063,656	3,956,000		329,000	3,948,000	
	Summit x350-48t	EA	3	4,437,400	13,312,200	798,000		66,000	792,000	
	Summit x250e-24p	EA	30	3,139,290	94,178,700	5,650,000		470,000	5,640,000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EPI Center7.0	EA	1	7,219,960	7,219,960	454,000		37,000	444,000	
방화벽	NXG800F	EA	1	23,378,100	23,378,100	1,402,000		116,000	1,392,000	
무선 AP	AP-4000	EA	15	654,500	9,817,500	589,000		49,000	588,000	
항온항습기	3RT	EA	4	4,675,600	18,702,400	1,140,000		95,000	1,140,000	
	3RT	EA	1	8,820,000	8,820,000	529,000		44,000	528,000	
	경보문자전송장치	EA	1	2,770,000	2,770,000	166,000		13,000	156,000	
UPS	10KVA	EA	1	5,610,700	5,610,700	336,000		28,000	336,000	
	10KVA	EA	1	7,000,000	7,000,000	420,000		35,000	420,000	
	3KVA	EA	3	1,215,700	3,647,100	218,000		18,000	216,000	
	2KVA	EA	5	935,100	4,675,500	280,000		23,000	276,000	
	1KVA	EA	1	700,000	700,000	42,000		3,000	36,000	
출입통제	지문인식	EA	2	654,500	1,309,000	78,000		6,000	72,000	
스위치허브	baseline2260	EA	1	1,636,500	1,636,500	98,000		8,000	96,000	
	baseline2250	EA	2	1,938,060	3,876,120	232,000		19,000	228,000	
	24포트 10/100	EA	3	1,348,000	4,044,000	242,000		20,000	240,000	
	24port 10/100	EA	6	1,722,000	10,332,000	619,000		51,000	612,000	
라우터	1Ethernet/2Serial	EA	1	2,387,000	2,387,000	143,000		11,000	132,000	
IP관리시스템	DL 320G6	EA	1	4,200,000	4,200,000	252,000		21,000	252,000	
	Windows2008	EA	1	2,420,000	2,420,000	145,000		12,000	144,000	
	Probe600	EA	1	9,835,700	9,835,700	590,000		49,000	588,000	
보안장비	IPSWall 1000	EA	1	10,420,510	10,420,510	625,000		52,000	624,000	
변압기	3상 3VA	EA	1	550,000	550,000	33,000		2,000	24,000	
소 계					425,414,480				24,828,000	
□ 정보통신 회선 유지보수										
통신회선	회선시형	회선	100				6,477	647,000	7,764,000	
소 계								647,000	7,764,000	

□ PC 및 프린터 유지보수										
PC본체	DN/DM-C600	EA	72	1,047,778	75,440,000	3,772,000		314,000	3,768,000	
PC본체	PQ310	EA	18	1,047,778	18,860,000	1,244,000		103,000	1,236,000	
PC본체	DM-V190	EA	28	880,000	24,640,000	1,626,000		135,000	1,620,000	
PC본체	B10KN	EA	77	850,000	65,450,000	4,581,000		381,000	4,572,000	
PC본체	DB-P105	EA	19	910,000	17,290,000	1,210,000		100,000	1,200,000	
PC본체	EMPU	EA	20	840,000	16,800,000	1,142,000		95,000	1,140,000	
PC본체	R10	EA	3	882,550	2,647,650	201,000		16,000	192,000	
PC본체	DM-V70	EA	3	1,180,000	3,540,000	261,000		21,000	252,000	
PC본체	DB-P73B	EA	48	930,000	44,640,000	3,258,000		271,000	3,252,000	
PC본체	DB-P73	EA	17	840,000	14,280,000	942,000		78,000	936,000	
	L955-DE	EA	70	148,790	10,415,300	687,000		57,000	684,000	
모니터	CN/LC1940R	EA	18	158,350	2,850,300	188,000		15,000	180,000	
모니터	L955-DE	EA	4	148,790	595,160	38,000		3,000	36,000	
모니터	LC943BX	EA	28	264,000	7,392,000	517,000		43,000	516,000	
모니터	LX942P	EA	28	260,000	7,280,000	582,000		48,000	576,000	
모니터	CX943	EA	10	280,000	2,800,000	184,000		15,000	180,000	
모니터	TGL19L	EA	10	253,617	2,536,170	164,000		13,000	156,000	
모니터	CX743B	EA	11	260,000	2,860,000	188,000		15,000	180,000	
모니터	CX918B	EA	4	290,000	1,160,000	74,000		6,000	72,000	
모니터	CX713BM-TSG	EA	5	305,000	1,525,000	106,000		8,000	96,000	
모니터	CX714TM-TSG	EA	18	315,000	5,670,000	374,000		31,000	372,000	
노트북	AVERTEK6700	EA	28	960,000	26,880,000	2,150,000		179,000	2,148,000	
노트북	NT-R70	EA	120	930,600	111,672,000	8,933,000		744,000	8,928,000	
프린터	신도리코 LP3532N	EA	10	792,000	7,920,000	605,000		50,000	600,000	
프린터	캐논 LBP-5300	EA	1	1,210,000	1,210,000	87,000		7,000	84,000	
프린터	캐논 LBP-6535K	EA	1	797,500	797,500	60,000		5,000	60,000	
프린터	캐논 LBP6330K	EA	2	572,000	1,144,000	80,000		6,000	72,000	
프린터	ML-3051	EA	1	302,650	302,650	22,000		1,000	12,000	
프린터	HP5100	EA	1	1,188,000	1,188,000	95,000		7,000	84,000	
소 계					479,785,730	38,382,000		3,198,000	33,204,000	
합 계									65,796,000	
부 가 세									6,579,600	
총 계									72,375,600	

36,527,000

일위 대가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구내케이블 회선시행	7-1-1(다)						
UTP케이블	단순도통	회선									
구내케이블 회선시행	통신케이블공	인	0.0500			210,204	5,255			5,255	
	보통인부	인	0.0300			81,433	1,221			1,221	
소 계							6,477			6,477	

정보통신 표준품셈 산출

공 종	규 격	단 위	작 종	품	할 증 적 용	할 증 품	품 셈
구내케이블 회선시형	단순도통	회선	통신케이블공	0.0500			7-1-1(다)분배함 및 랙(Rack), Patch Panel 등 설치
			보통인부	0.0300			

2013년 하반기 노임단가

직종명	노임단가	비고
통신케이블공	210,204	
특별인부	97,951	
보통인부	81,433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과업지시서

2013. 01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 목 차 ◀

제 I 장 총 칙	
제1조(목적)	1
제2조(용어의 정의)	1
제3조(입찰참가자격)	1
제 II 장 유지보수	
제4조(적용범위)	1
제5조(유지보수 장소)	1
제6조(유지보수 체제)	2
제7조(유지보수료)	2
제 III 장 예방점검 및 지원	
제8조(예방점검 실시)	2
제9조(정기점검 및 상주유지보수)	2
제10조(예비 장비 및 부품의 비치)	3
제11조(장비의 수리 및 부품교체)	3
제 IV 장 장애조치	
제12조(장애복구)	4
제13조(장애조치 시간산정)	4
제 V 장 책임이행	
제14조(손해배상)	5
제15조(위험부담)	5
제16조(보안책임)	5
제17조(책임이행)	5
제18조(분쟁의 해결)	5
제 VI 장 계약 및 기타사항	
제19조(계약기간)	6
제20조(계약의 해지)	6
제21조(변동사항 등의 통보)	6
제22조(교육 및 기술 지원)	6
제23조(어구의 해석 및 기타)	6

유지보수용역 과업지시서

제 I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정상가동을 위한 일체의 예방정비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수리를 위한 계약조건이며,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유지보수 계획에 따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가 수행할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정보통신설비(이하 “설비”라 한다)라 함은 정보통신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데이터통신회선, PC 및 프린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모든 기반시설을 말한다.
- ② 유지보수라 함은 설비 및 정보기기의 정상운동을 위한 예방, 정기점검과 장애 발생시 복구 조치 등의 제반 활동을 말한다.
- ③ 유지보수료라 함은 이 계약에 관한 과업이행을 위한 제반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부품비, 수선비, 인건비, 기타제작비 및 본 계약에 의하여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일체의 경비)을 말한다.
- ④ 장애라 함은 설비 등의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제 3 조 (입찰참가자격)

-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② 최근 3년 이내 관공서(공공기관)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단일건 2000만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 ③ 주요장비인 백본스위치, 방화벽의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시 제출
- ④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1인 상주 가능한 업체

제 II 장 유 지 보 수

제 4 조 (적용범위)

- ① 설비 등의 유지보수 대상은 [첨부1]과 같다.
- ② “갑”의 사정에 의해 제①항의 유지보수 대상은 증감될 수 있다.
- ③ 대상 설비의 유지보수 일체(점검, 설정, 설치, 제거, 수리 등 S/W(OS, Utility, 응용S/W, 각종 패키지등), 운영체제(XP/윈도우비스타/윈도우7 등) 운용에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변경, 유지관리 등의 업무, 교육용 인터넷, 행망, 팩스 등의 통신업무 일체를 포함한다.
- ④ “을”은 매월 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첨부2]의 양식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선 변경시 3회선 미만은 추가비용 없이 회선 변경을 하여야 한다.

제 5 조 (유지보수 장소)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업무는 설비가 설치된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한다. 다만, 유지보수 수행 필요에 의하여 “갑”이 다른 장소에서 유지보수 업무 수행을 요청할 경우 “을”은 “갑”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 6 조 (유지보수 체제)

- ① 유지보수의 비상연락체제는 24시간 상시 복구체제를 유지하여, 설비의 장애 발생시 언제든지 장애해결 능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설비의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복구하여 “갑”의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유지보수 시간은 모든 국·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정규 근무시간(공무원의 법정근무 및 비상시간)으로 한다. 단, 필요시 “갑”의 요구에 따라 “을”은 정상근무시간 이외에도 정규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협조하도록 한다.

제 7 조 (유지보수료)

- ① “을”은 계약서의 유지보수료를 1~3개월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의 계약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을”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유지보수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매월 유지보수료로 정산하는 금액은 총 계약금액에서 12월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유지보수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 유지보수료를 해당 월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에 실제 유지보수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정산한다.(계약 후 첫째 월의 점검일수는 착공계를 제출하고 유지보수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 III 장 예방점검 및 지원

제 8 조 (예방점검 실시)

- ① “을”은 시스템의 이상유무, 동작상태 확인을 위하여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예방점검의 종류는 정기점검, 특별점검, 수시점검이 있으며, 정기점검은 매월 1회 실시하며, 특별점검은 정기점검에서 제외된 설비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이며, 수시점검은 “갑”의 요구에 의한 점검을 말한다.
- ③ “을”은 모든 점검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의 범위 및 점검에 필요한 현황 등은 “갑”이 제공한다.

제 9 조 (정기점검 및 상주유지보수)

- ① 정기점검은 설비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정상 동작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으로 매월 1회 실시한다.
※ <첨부1. 정보통신설비 현황>에 따른 전체 설비 해당
- ② “갑”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방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을”은 즉시 조치

하여야 한다.

- ③ “을”이 점검을 완료하고 작성한 점검결과는 익월말까지 [첨부2]의 양식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내역 및 양식은 “갑”의 판단에 따라 추가, 변경이 가능하다.
- ④ 상주유지보수 ; 유지보수의 시간은 국·공휴일 및 임시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정규 근무시간(공무원의 법정근무 및 비상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상근무시간 이외에도 “갑”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을”은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을”은 매월 말일까지 정기점검 등이 기록된 기록부(붙임 참조)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장비는 “갑”의 요청에 따라 운영하는 장소에서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과 “을”의 합의 하에 필요한 장소로 장비를 이동하여 보수할 수 있다.
- ⑥ “을”의 상주요원은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회선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상황에 협력하여야 한다. 위의 정기점검 결과, 장애 조치, 처리내역에 관한 사항은 장애처리부에 기록하여 월 단위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을”은 장비의 구매 또는 불용에 의거 수량의 변동이 발생하면 “갑”의 요구에 의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예비 장비 및 부품의 비치) “을”은 장애복구용 대체 장비 및 부품들을 “갑”이 지정한 장소에 항상 보유하고 있어 장비 및 부품 부족으로 인한 장애복구 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① “을”은 신속한 유지보수 이행을 위하여 정품을 항상 확보하고, 예비장비(전원부 포함)를 “갑”이 지정한 장소(“갑”의 정보통신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장비의 수리 및 부품교체)

- ① “을”은 부품의 회로단락, 소자, 칩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 무상으로 수리해야 한다. 또한, 수리에 사용할 부품은 기존부품과 동일한 성능이상의 신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단 PC와 프린터의 소모품은 제외한다.
- ② “을”은 월 5회선 범위내의 케이블이 증설되더라도 회선유지보수 범위에 포함하여 무상으로 증설하며, 관련 소모품(RJ-45잭, 캡, Name타이 등)의 추가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③ 다만,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설비의 소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기타사고는 다음과 같다.
 - ㉠ “갑”의 중대과실로 인한 장애
 - ㉡ “갑”의 임의 정비, 개조 등의 시도로 인한 장애
 - ㉢ “갑”의 부대시설(건물, 전력 등)의 명백한 환경여건 장애

제IV장 장애조치

제 12 조 (장애복구)

- ① “을”이 “갑”으로부터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을 때에는 신속하게 장애 복구 조치에 임하여야 하며,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 장애일 경우에는 장애발생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설비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경우에는 그 책임은 “을”에 있다.
- ③ 장애복구 후 “을”은 “갑”에게 장애발생원인 및 조치사항을 [첨부2]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을”은 “갑”의 중대 장애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3시간 이내에 고장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때 “갑”은 “을”이 정상적인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작업공간, 전기설비 등 작업환경을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지고 유지보수에 임해야 한다.(장애복구 후 1일 이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가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⑤ “을”은 주요 장비의 장애가 발생한 각종 시스템에 대한 수리가 장시간 소요된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별도의 동종기기로 대체하여 임시 설치함으로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⑥ “을”은 제3항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하지 못했을 경우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장애복구를 위한 최선의 응급조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⑦ “갑”과 사전협의 없이 “을”의 요원이 기기의 내부수리 등 조작으로 일어난 장애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 13 조 (장애조치 시간산정)

- ① 장애조치 시간은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시간으로부터 장애조치 완료 후 “을”이 “갑”에게 장애조치 완료를 통보한 시간까지 산정한다.
- ②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한 장애가 재발하는 경우, 장애조치 시간산정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기산한다.
- ③ 장애발생시 완전한 장애복구에 장시간 소요되어 “갑”의 행정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 “갑”은 “을”에게 우선 장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한 후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에 완벽하게 장애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때, 장애조치 완료시간은 다음과 같다.
 - ㉠ 장애조치 완료시간 = (응급조치 완료시간 - 최초장애 통보시간) + (최종완료시간 - 정상근무 종료시간)
- ④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지체 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한다.
 - ㉠ 장애처리지연 지체상금 = (월 유지보수금액 × 2.5/1000) × (복구지연시간/24)

제 V 장 책임이행

제 14 조 (손해배상)

- ①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갑”의 재산(임차포함)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발생에 대한 “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경우 입증책임은 “을”에게 있다.
- ② 손해액에 대한 산정은 2개 이상의 국내 전문 공인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을 감정가로 하며 “을”은 갑에게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 15 조 (위험부담) “을”은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보수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자기 책임 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위험 발생이 예견될 경우 “을”은 “갑”에게 즉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발생한 재해로 인한 손해는 “갑”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16 조 (보안책임)

- ① “을”은 이용기관의 정보통신실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 담당자나 “갑”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해하여야 한다.
- “을”은 유지보수 요원의 신분진술서 등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을”은 유지보수 요원에 대하여 신분조회시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용역수행 중 특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타 기관에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유지보수용역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신분증명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을”은 유지보수를 위하여 담당 유지보수요원의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⑤ “을”은 정보통신실에서 직접, 간접으로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을”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⑥ “을”은 “갑”의 유지보수 장소에 출입한 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유지보수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사실 등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 17 조 (책임이행)

- ①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동안 발생한 책임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장이 발생시 “을”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 “갑”의 고의적인 고장 및 훼손
㉡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항

제 18 조 (분쟁의 해결)

- ①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으면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본 계약사항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다만, “을”이 유리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을”의 해석에 따를 수 있다.
-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 VI 장 계약 및 기타사항

제 19 조 (계약기간)

- ① 이 계약의 이행기간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 ② 본 계약 만료 후 “갑”의 사정으로 다음연도 새 유지보수 업체 선정되기 전까지 본 변경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본 계약이 유효한 동안 “을”은 “갑”의 작업지시에 따라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20 조 (계약의 해지)

-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조항을 위반한때.
㉡ 제6조의 사항을 월 3회 위반하여 “을”이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
- ② “갑”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30일전에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고 “갑”과 “을”의 협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21 조 (변동사항 등의 통보)

“을”은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을”이 책임진다.

제 22 조 (교육 및 기술지원)

- ① “을”은 유지보수 장비 등에 대한 “갑”의 기술지원 요구시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 ② “갑”의 사정에 의한 서버 및 주변기기의 증설·이설과 타 기종으로의 교체 또는 통신망변경 등에 따른 “갑”의 기술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최대한 협조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원인불명의 장애발생시 신속히 원인규명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④ “갑”은 유지보수 대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을”에게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을”은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과 성능개선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한 “갑”의 기술관계 협의 요구시 해당 직원을 참석시켜 “갑”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 23 조 (어구의 해석 및 기타)

- ① 계약서 조건에 이의가 있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구의 해석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 ② 본 계약서상의 소송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정보통신 시설장비 내역

2013. 01.

구분 장비명	모 델 명	수량	설 치 장 소	비 고
백본스위치	BD8810	2	본관 정보통신실(2)	
스위칭허브	X350-48T	3	본관 정보통신실, 창의관 멀티미디어실(2)	
	summit200-24	1	창의관 멀티미디어실	
	Summit24e2	2	생활관(다솜관)	
	3com 24port	3	본관(배움관)	
	3com 48Port	3	제1강의실	
광스위치	X450a-24X	6	본관(2), 창의관(2), 생활관(2)	
Poe 스위치	X250e-24P	34	본관[17 ; 인재기획과(2), 인재양성과(2), 소회의실(1), 3F강의실(3), 정문(1), LAN실(4)], 창의관(8), 다솜관(9)	
보안장비	NXG800 (침입차단)	1	본관 정보통신실	
	IPS4000 (침입방지)	1	본관 정보통신실	
라우터	CISCO1700	1	본관 정보통신실	
AP	802.11	15	본관(7), 창의관(6), 생활관(2)	
LAN회선	LAN, IPT, FAX, 인터넷	380	본관, 창의관, 정문, 다솜관	
변압기	3상 30KVA	1	본관	
IP 관리시스템	Probe600,	1	본관, 생활관	
UPS	10K	2	배움관, 창의관	
	3K	4	본관(1), 멀티미디어실(1), 다솜관(2)	
	2K 이하	12	인재기획과, 인재양성과, 본관 강의실, 소회의실, 전기 실, 영사실, 정문, 본관 통신실(2), 창의관 통신실(3),	
항온항습기	3RT이상	5	본관(2), 창의관, 생활관, 강의동	

※ 산출내역 참조

정 기 점 검 표

컴퓨터(PC) 등 단말유지보수 대상				
□개인용 컴퓨터				
구 분		수 량	비 교	
총 계		498		
사무용	인재기획과	소 계	129	
		원 장 실	2	컴퓨터(H/W, S/W, OS)
		과 실	30	
		u-러닝팀	11	
		전 형 팀	15	
		전 기 실	6	
		차량지원실	7	
		도 서 실	3	
		의 무 실	2	
		안 내 실	2	
	정 문	4		
	208호	2		
	인재양성과	과 실	27	
		창의학습팀	7	
		영 사 실	7	
		교 수 실	1	
		교육용		152
사이버강의실		51		
멀티미디어실		71		
1~13강의실	13			
예 다 원	1			
창의관 강의실101~4,201~204,301~304	12			
대 강 당	1			
소 강 당	1			
세미나실	1			
창의관강당	1			
기타	소 계		217	
	기 타	식 당	2	
		당 직 실	3	
		통 신 실	16	
		노조사무실	2	
		다솜관 층별	10	인터넷 PC
		분관 4층	4	
		창의학습팀, 1강의실	150	노트북
각 실과	30	프린터		

장비명	설치 위치	
전 원	입력전압 (V)	선로배전상태 양호, 불량 ()
배 관 상 태		배관상태 양호, 불량 ()
장 비	점 검 내 역	점 검 결 과
현 황	총 Slot 수량	
	Giga 모듈 수량	
	FastEther 모듈 수량	
	관리 모듈 수량	
	GBIC 수량	
	PORT수	
	Power Module 수량	
상 태	LAMP상태 이상 여부	양호, 불량 ()
	LINK 상태 이상 여부	양호, 불량 ()
	FAN 상태 이상 여부	양호, 불량 ()
	Error 발생 여부	양호, 불량 ()
정 보	CPU 사용률 (%)	
	Memory 사용률 (%)	
	온도 (C)	
	Bootrom Version	
	Image Version	
	Boot Time	
	Current Time	
	Configuration 정보	
	Route 정보	
	Protocol 동작 여부	
	Vlan 정보	
	Port 상태	
	Port Error 상태	
	log 분석 결과	
환 경	청소 상태	양호, 불량 ()
특 기		
기		
및		
지		
시		
사		
항		

정 기 점 검 표

향온항습기 점검일지	
점검사항	점검결과
1. 현재의 정격 전압	
2. Compressor 가동 상태	
3. Compressor 운전중 상태	
4. Compressor 압력	
5. Blower Belt 장력 및 소음	
6. M /S 작동상태	
7. 자동제어기기, 작동상태	
8. 히터 작동상태	
9. 가습기 급수 및 작동상태	
10. 계기, 램프 및 스위치 작동상태	
11. 가습기 청결상태	
12. 실외기 상태	
13. Air Filter 상태	
14. Water, CIR Pump 소음 및 진동	
15. 냉각수 누수 상태	
16. 향온항습기 내부 및 외부상태	
정 비 사 항	
정비요망사항	
점 검 자	

IP전화교환시스템 유지보수 특수조건

2013년 01월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본 계약의 당사자인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이하 "갑"이라 칭함)과 유비아이티(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 인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IPT교환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관한 용역 계약(이하 계약이라 칭함)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 (1)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의뢰에 의해 "을"이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 설치된 IPT교환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는데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 (2) 계약서 작성 이후 본 계약의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 쌍방의 서면 합의 후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 기간】

본 계약서의 유효 기간은 2013년 2월 1일부터 2014년 1월31일로 하며,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제 3 조 【유지보수 개요】

본 계약에서의 유지보수란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이하 "갑")에서 사용되고 있는 IPT교환시스템 일체(IP 전화기 포함)에 대한 설치, 수거, 설정변경, 현장점검, Report 등의 IPT교환시스템에 관련된 작업 전체를 말한다.(IPT전화기는 "갑"이 설치, 수거, 설정변경 등의 1차 대응 후 "을"에게 인계하여 "을"이 수리 후 "갑"에게 설치 인계한다.)

- (1) 유지보수 대상 장비 및 통신회선(구내전화, 국선, Fax, 광케이블, UTP) 등에 대한 장애발생시 장애 통보 후 3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6시간 이내에 고장을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장애복구 후 1일 이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가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2) 주요 메인 교환장비의 장애 발생시 2시간 이내 도착하며, 고장 발생후 3시간 이내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유지보수요원은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주요장비 및 통신랙(장비포함) 등에 대한 정기점검 방문은 월별 실시하여야 하며, 원격정기점검 결과에 대한 정기점검계획서는 주별로 제출한다. 장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점검을 포함한다. 위의 정기점검에 대한 사항은 장애처리부에 기록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하자보수 및 장애처리】

- (1) "을"은 "갑"이 요청하는 IPT교환시스템에 관한 일체의 유지보수 용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유지보수 대상 장비(별첨)에 대한 하자 및 장애발생으로 인한 일체의 해당 부품교체, 대체장비 교환등으로 중단을 복구조치 하여야 한다.
- (2) "을"이 당해 실시한 IPT교환시스템의 유지보수 내용 및 장애조치 결과는 매월 말일 장애처리일지를 보고서 형식의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3) 기타 직접적인 유지보수 작업을 제외한 기타 추가작업은 유지보수계약 또는 추가계약의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 (4) "을"은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예비장비(전원부 포함)를 항상 확보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대처 하여야 한다.
- (5) 유지보수대상 IPT장비들이 네트워크장비 및 전용회선, 통신회선, PC등 부속장비에 장애를 발생하는 원인이 될 경우 이를 포함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해당 사항을 조치한다.

제 5 조 【기술 지원】

- (1) "갑"의 사정에 의한 주요장비 및 주변기기의 증설, 이설 과 타 기종으로의 교체 또는 통신망의 변경 등에 따른 "갑"의 기술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최대한 협조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2) 원인불명의 장애발생시 신속히 원인규명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3) "갑"은 수시로 "을"에서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IPT교환시스템의 운영을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시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갑"에게 보고할 책임을 가진다.
- (4) "갑"은 유지보수 대상품목에 대한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6 조 【기밀유지】

- (1)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또는 취득한 상대방의 기술상, 업무상의 비밀을 보장하며,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 (2) "을"은 유지보수 요원의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보안(통제)구역등을 출입 유지보수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 (3) 본 조는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 7 조 【각종 자료 및 계약내용의 관리】

- (1) 당해 IPT교환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 "을"에게 제공되는 각종 자료 및 내용들은 최초 제공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을"의 관리 시점에서 하자 발생 시에는 분실, 훼손 등에 따른 변상을 "갑"이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그 각종 자료 및 내용들을 "갑"의 허락 없이 타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2) 변동사항 등의 통보
"을"은 계약체결이후 주소, 대표자, 유지보수 요원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손실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진다.

제 8 조 【용역비의 지불】

- (1) "갑"은 "을"의 당해 유지보수에 대한 용역비를 다음 (2)항의 지불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 (2) 용역비 내용은 다음과 같다. (VAT포함)
- 월/분기 유지보수 용역비용 : 계약금액 총액을 계약기간[월/분기별]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 (3) 용역비의 청구는 "을"이 "갑"의 IPT 시스템에 대한 주간(주별) 정기점검 실시한 후 점검부를 제출하고 해당월(년) 또는 2~3개월 기준으로 "갑"에게 청구한다.
- (4) 용역비의 지불은 "을"이 "갑"에게 해당 분기 용역비 계산서를 발행한 당월말 기준으로 익월말한 이내에 지급한다.

제 9 조 【추가 유지보수비용의 산정 및 지불 방법】

- (1) 계약서의 유지보수 비용에 준하여 초과요구사항의 발생 시 추가적인 비용의 발생을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추가건적에 대한 명세서를 통지한다.
- (2) 추가 유지보수비용 지급시점은 "갑"과 "을"의 사전 상호합의하에 조정 가능하다.

제 10 조 【계약의 해지】

-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고, "을"이 이를 불이행하거나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갑"이 판단한 경우 "갑"은 "을"에게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조항을 위반할 때
 2. 월 3회 이상 제한된 장애복구시간을 지연하여 "을"이 본 계약을 수행할 수 없을 때
 3. 지체상금을 3회 이상 적용 받았을 때
 4. "을"이 파산 선고를 받거나 해산, 청산,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갔을 때
- (2) "갑"의 계약 위반에 대한 "을"의 시정 요구를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3) 위 (1)(2)항의 해지 효력은 "갑" 또는 "을"이 서면으로 해지 통보를 발송한 날로부터 해당월 말일 한 이내로 효력이 발생한다.
- (4) 본 조 제1항 이외의 경우로 "갑"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 "갑"은 기지급된 대금의 반환을 "을"에게 요구할 수 없다.
- (5) "을"에 의한 계약 해지의 경우, "을"은 총 계약 금액의 전부, 미이행 부분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 11 조 【불가항력】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전쟁, 폭동, 홍수, 지진, 정부의 조치 등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 불이행이나 이행의 지체에 대하여는 그 어느 일방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2 조 【계약의 해석 및 재판관할】

- (1)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내용 및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그 내용의 수정 및 첨삭을 결정한다.
-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은 이를 상호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견이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없을 경우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3 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서면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갑"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30일전에 서면으로 "을"에 통보하고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 및 해지할 수 있다.

제 14 조 【신의 성실 및 협조】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은 신의와 성실로써 본 계약을 수행해야 하며, "갑"과 "을"은 본 계약에 의한 계약 기간 및 제작 기간 동안 원활한 제작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 15 조 【유지보수요원 자격 및 교체】

- (1) "을"은 주요납품장비 설치 경력2년 이상인자를 책임기술자로 지정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경력증명서 제출), 유지보수 요원은 "갑"에 납품설치한 경력자, 2년이상인 유지보수 경력이 있는 유지보수요원을 배치한다. 예비요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상시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하며, 출입자는 신원조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갑"은 유지보수요원의 장애조치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상태 불량 등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이유로 교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을"은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3) "을"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유지보수 요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20일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이를 승인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쌍방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 17 조 【기타】

- (1) 본 계약서의 작성시 쌍방 합의된 최종 견적서 및 쌍방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첨부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본 계약서는 "을"과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간에 체결한 IPT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 이행, 계약 물량 변경시 IPT전화기를 포함한 조항을 승계한다.
- (3) "을"은 "갑"의 승인하에 본 계약이행에 필요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갑"은 유지보수 요원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본 계약을 입증 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을]	
대표자	인 재 개 발 원 장 (인)	대표자	김 창 갑 (인)
사업자등록번호	214-83-00354	사업자등록번호	210-12-52831
주 소		주 소	서울 노원구 상계동 1262 하이베라스 519호

- 첨부 : 1. 유지보수 대상내역 1부.
2. 주요장비[단말] 장애처리부 1부.
3. 정기점검기록부 1부.

<붙임1>

유지보수 대상 내역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비 고
IPT 교환시스템	S8730 × 2EA	1	SET	미디어
	S8510	1	EA	SIP
게이트웨이 (Analog포함)	G650 Gateway	1	SET	
	IPS12 CP TN2312BP RHS	1	EA	
	C-LAN Circuit Pack TN799DP	3	EA	
	Flash Reader	2	EA	
	VAL TN2501AP	1	EA	
	Facility Test CP TN771DP	1	EA	
	24PT Analog Line CP TN793CP	1	EA	
	DS1 INTFC TN2464CP	3	EA	
	G450 Gateway	1	EA	
	S8300 Media Server	1	EA	
	MM710 E1/T1 Media Module	1	EA	
	MM714 ANLG Media Module	1	EA	
인터넷(IP)전화기(고급형)	컬러 LCD 디스플레이, 9640 IP Phone	220	EA	
인터넷(IP)전화기(보급형)	LCD 디스플레이, 1616 IP Phone	65	EA	
PoE 스위치	L3 10/100 24P PoE, GB 4Port, X250e/X450	1	SET	
U P S	APC 2.2KVA 220V, AVAYA 1.5	3	SET	
유지보수시스템	ASA 5.0, R410	1	SET	
요금등산(과금)시스템	CAS 3.5, CMS Data Controller	1	SET	
IPT 회선	Cat.5E, 2P/국선/FAX	200	식	점 검

<붙임2>

주요장비[단말] 장애처리부

부서명		전화 번호	행정	
			일반	
접수시간	월 일 :	처리시간	월 일 :	
장 비 명				
규 격				
장애내용				
처리내용				
비 고				
위와 같이 수시 점검 요청을 접수·처리하였음을 확인함			담당CE	(인)
			확인자	(인)

<붙임3>

정 기 점 검 일 지

○ 업체명 :		○ 설치장소 :		○ 용량 :	
부서명	장비명	수량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과					
팀					
일 시	장애내용	처리시각	원인	점검결과	비고
점검일자			확인자	부서 :	
정 검 자				성명 : (인)	

※ 첨부서식 ; 처리일지, 정기(월, 분기별) 서식변경 가능